

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0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08.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주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(안 제29조의2 신설)
- 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기타
 - (1) 입법예고 (2011. 07. 22 ~ 08. 12) 결과 : 의견없음
 - (2) 규제심사
 - (3) 부패영향평가

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여성발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기타”를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 및 그 밖의”라 하고 “충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”를 “충주시의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정의는”를 “뜻은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3조제2호에”를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시는”을 “충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제2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6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2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20명”으로
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호 중 “기타사유로”를 “그 밖의 사유로”로 한다.

제29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.
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
수 있다.

제30조제8호,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
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발전기본법」 <u>(이하 "법"이라 한다)</u>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(이하 "시"라 <u>한다)</u>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여성발전기본법」 및 그 밖의----- ----- 충주시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"여성단체"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. 3. (생략) 	<p>제2조(정의) ----- 뜻은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「여성발전기본법」(이 하 "법"이라 한다)제3조제2호에-----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시의 책무)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 하여 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 며 이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의 책무) 충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 는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8조(여성주간행사) 시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 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여성주간행사) ----- ----- 제26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1조(모성보호의 강화) ① (생략) ②시장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의 규정 <u>에 의한</u>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모성보호의 강화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제14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7조(여성단체 등의 지원) 시장은 여성의</p>	<p>제17조(여성단체 등의 지원)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,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(법 제3조제2호 및 <u>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</u>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)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충주시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18조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<u>의한</u>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18조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따른</u> -----</p>
<p>제2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여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	<p>제20조(기능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<p>제21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<u>1인</u>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<u>1인</u>을 두며,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된다.</p>	<p>제21조(구성 및 임기) ① -----</p> <p>----- 1명을 포함한 20명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1명 -----</p>
<p>제2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사유로</p>	<p>제22조(위원의 해촉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. (생략)	<u>사유로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
제29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~ 2. (생략) 3. <u>기타</u> 수입금	제29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의</u> -----
<u>< 신 설 ></u>	제2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.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제3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1. ~ 7. (생략) 8. <u>기타</u>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제30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그 밖에</u> -----
제31조(기금운용계획 및 관리) ①시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3. <u>기타</u>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~ ③ (생략)	제31조(기금운용계획 및 관리) ①-----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32조(기금운용심의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	제32조(기금운용심의) ----- ----- 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 --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